

#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5
----------	------

2020.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5.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20. 5. 29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 6. 17.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봉양순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주거와 관련된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여 아동을 서울

특별시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주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아동 주거빈곤”을 정의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놓일 수 있는 아동과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정책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정의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처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제안경위

-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주거빈곤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문제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봉양순 의원이 대표 발의(12명 공동발의)하여 5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그간 아동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19.11.1),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현장답사('20.4.29) 및 서울시장과의 정책간담회('20.4.29),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20.6.12) 등을 개최하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됨.

#### □ 제안배경

-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은 전국적으로 전체 아동의 9.7%인 약 94만명(54만 가구)에 달하며, 서울시의 경우 약 23만명(15만 가구)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최근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주거복지의 큰 틀에서 아동주거복지와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sup>1)</sup>, 아직

1) '19.10.24,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법령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아동 주거빈곤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수단을 발굴·추진 중에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없이 단위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sup>2)</sup>.
- 최근 우리사회는 저성장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계층별 복지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금년에 접어들어서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사회에 발생하면서 기본소득보장을 포함하여 영역별로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음.
- 특히 주거빈곤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화재위험·폭염·위생상태 등 물리적 안전 위협상황, 개인공간 부재·빈번한 가족내 갈등상황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up>3)</sup>가 나오면서 아동주거빈곤 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임.

---

강화 대책', 정부 관계부처 합동

'19.12.06, "내 방이 있는 집"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및 청년 입주자격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 2) '19.6.~7. '자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실태 조사(25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19.9.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 및 '19.10. 관련기관 협약  
'20.1~'21.1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 발주)
- 3) 2017년~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을 받고 2019년 주거개선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보호자 173명, 아동 153명 응답) 조사분석한 결과, 주거의 이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서 장차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세대인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뿐 아니라 이를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됨.

##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층 또는 옥탑방, 그 외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 18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 둘째, 아동 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시장이 5년 단위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의무와,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 (안 제3~5조).
  - 셋째,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주택공급 또는 개량, 임대보증금 지원, 긴급주거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 넷째,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변경,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및 해촉사유,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7조~제11조),

- 다섯째, 시장은 필요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15조).

## □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4)에서는 ‘아동’을 주거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19.10월 정부에서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강화대책<sup>5)</sup>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으로, 이 조례는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主)대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주거환경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울의 아동 주거빈곤 밀집도와 주거비수준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

4)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19.10.24.)

때, 아동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사료됨.

## 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관련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안 제6조제1항)

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사업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긴급주거 지원사업 이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안 제6조제1항제5호). 여기서 '보호종료아동'<sup>6)</sup>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의미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함.

-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8조7)에 따라 ‘자립수당’<sup>8)</sup> 외에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는 임대료 지원(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월 15만원 지원), 주거환경조성(50만원 상당 생활·필수집기 등 물품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최장 4년까지(1회 연장포함) 지원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거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기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급물량 5%범위 내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할 수

7)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전년도 대비 1년 늘어난 3년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책자, 2020.)

2019년	2020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sup>9)</sup>).

<현행 정부지원 주거형태 세부내역>

정부지원 주거형태	신청대상	서울시 지원 (국비:시비 50:50)
① 청년전세임대주택 (LH)	보호시설 퇴소예정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1순위 임)	임대료 지원:20만원 생필품 지원:5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20만원
②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LH)		
③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④ 자립형 그룹홈 입주지원(5인 이내)	만18세~만 23세이하의 자	국비매입, 시 운영
⑤ 자립지원 시설(자립생활관)	만18세~24세 이하의 자	민간시설, 운영보조비

※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지원, 만21세 이상은 이자(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출처: 주택정책과 내부자료)

- 개정 지침에 따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아동에게 국비와 시비매칭(50:50)으로 임대료·생필품·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정부주도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지원 사업들과 연계가 능토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9)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11호)

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범위내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필요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이와 유사하게 국토교통장관이 공고하여 운용중인 ‘최저주거기준’이 있는데, 이는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설정한 지표로서 ‘아동 적정주거기준’과는 차이를 보임. ‘최저주거기준’<sup>10)</sup>에서는 가구원 수별 최소 주거면적, 아동의 수를 감안한 용도별 방의 개수 등 공간적 기준을 정하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이대별 침실분리원칙 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주거상향을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판단됨.

10) 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1-490호, 2011.5.27.)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sup>1)</sup>	실(방) 구성 <sup>2)</sup>	총주거면적(m <sup>2</sup> )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 방(침실)분리원칙 : 만6세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8세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남1, 여1), K는 부엌, DK는 식사겸 부엌, 숫자는 방수

- 조례안에서는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다소 추상적·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의 범위를 고려하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설계적 요소(면적, 방의수, 설비, 구조 등)와 환경적 요소(채광, 환기, 소음, 악취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는 바<sup>11)</sup>, 단서신설을 통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_____ _____.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법 상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라.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관련

-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 주거빈곤 상황이 일반 성인이나 노인 등 고령의 주거취약계층과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존재하기에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 실질적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시행 및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11) 환경적 요소와 관련한 개별 기준과 근거법들은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용역의 과업범위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포함시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기타 주택·복지 등 관련 부서간 의견을 조정·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sup>12)</sup>에서는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아동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은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중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13)</sup>.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98년 설치)

- ▶ 설치근거 : 주거기본법 제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8조
- ▶ 설치목적 : 주거종합 계획 등 주거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 주관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sup>14)</sup> '아동 주거빈곤해소를 위

12)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주거복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정합성 확보차원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음.

- 한편, ‘위원회 조례’를 주관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제출할 경우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규정 중 누락부분(존속 기간,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sup>15)</sup>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sup>16)</sup>.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담당관 의견(서울협치담당관-6820, 2020.6.2.)

▶ 존속 기한

-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함.
- 존속기한은 최대5년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며(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3), 5년을 초과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개정 통해 존속기한 규정변경 필요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제척이란,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사

## 마. 기타사항

- 기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sup>17)</sup> 및 토론회에서는 ‘가족이 있으나 가출 등으로 노숙, 임시거처 거주 등 주거 위기상황인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sup>18)</sup>. 가구에 소속된 아동의 경우 원가구가 아닌 별도 주거지원을 할 경우 가정이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 주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범죄, 성폭력 등 또 다른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노출이 예상되는 바 임시적이고 대안적 차원에서 주거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5. <생략>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b>긴급</b> 주거 지원사업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5. <생략>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b>긴급 또는 대안적</b> 주거 지원사업

- 그 밖에 ‘청소년 미혼모’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 「지방자치법」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17) 2020.6.3.~6.10.(8일간)

18) 의견제출자 : 청소년주거네트워크

정된 이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안 제16조는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종합의견

-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sup>19)</sup>하여 중앙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지원 조례」<sup>20)</sup>를 선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주거안전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
- 금번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어 제도권내에서 집중 조명됨으로써, 이들의 적정 주거수준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잡리잡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아동주거복지 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서울시의 분야별 복지정책을 총괄<sup>21)</sup>하고 있는 복지정책실과의 역할설정 등 서

19) 舊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91호, 2012.12.31.제정.

20) 서울특별시조례 제7263호, 2019.7.18. 제정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21)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2012년 전국최초로 5개 분야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서울시민 복지기준1.0」(‘13~’18)을 마련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보완·발전시킨 「서울시민 복지기준2.0」(‘19~’22)을 향후 4년간 서울시 복지정책

울시 관련부서간 관계정립을 포함한 부서간 업무협력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35
----------	---------

제안일자 : 2019. 06. 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필수 항목을 추가로 정하며, 적정주거기준 설정 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중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도 포함함.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제2호항 신설)
-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9조 신설)
- 아동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법령 상 최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안 제14조)
- 시행규칙 포괄 위임규정을 삭제함. (제정안 제16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함. (안 제18조)

##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6호 중 “긴급주거”를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안 제16조는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안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p> <p>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u>긴급주거</u> 지원사업</p> <p>② (생략)</p> <p>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1. ~ 4.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p> <p>① (제정안과 같음)</p> <p>1. ~ 5. (제정안과 같음)</p> <p>6. ----- ----- <u>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u>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u></p> <p>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u>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u></p>

<신 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략)

제9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

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제정안 제8조와 과 같음)

제11조(위원장 등) ① ~ ③ (제정안 제9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라. 예외적으로 시장이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아동주거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및 주거, 아동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동 주거빈곤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아동이나 주거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 과, 관련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